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7일, 김선민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 11.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민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월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노령연금액의 조정을 통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임.

이에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1년간 유지한 후 이를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여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60대가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활동 연계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폐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근로소득월액이 전체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노령연금액을 감액·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과의 형평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제도의 완화는 주로 고소득자의 수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점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등 각 직역연금에서도 퇴직·퇴역연금 등 수급권자의 사업·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급여액 일부를 감액하고 있어 공적연금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

(소위원장 김미애)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19.)

(소위원장 이수진)

생 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